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05. 8. 30.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05. 8. 31.
- 라. 상정일자 : 2005. 9. 2.(의회운영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5 - 46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2005. 8. 5)에 따라 본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함(안 제6조 제2항)
- 제6조(의정활동·회의수당지급기준) 제2항을 “회기수당은 출석 일수 1일에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함.
- 기타 제명 및 자구 등을 적합하게 정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수당에 관한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편성된 예산이 72,800천원으로 100,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4,040천원이 부족하여 추경시 예산확보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절차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음.

8. 소수의원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생략”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의안번호 : 제2005 - 42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12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5.7.1 조직개편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던 농정과가 농업 기술센터와 통합됨으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배제되어 있어 포함시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제명을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각 실과장에서 농업관련 부서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개정조례안은 2005.7.1 거창군 조직개편시 농정과가 농업 기술센터에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내용대로 할 경우 농정 분야가 제외되는 것으로 거창군정의 많은 부분이 농업분야임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며 ----- -----.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 -----.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신주범 의원 외 5인
- 다. 의안번호 : 제2005 - 47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12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권자를 확대하고 심의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존의 수여대상 추천권자의 군청의 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4호)
-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며, 국내외 귀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확대지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현재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2명뿐임

(전 거창군세무서장 조동호,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최종원)

○ 추천권 자를 군청의 실·과·사업소장과 읍·면장을 추가한 것은 실제 거창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기가 용이할 뿐 아니라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에는 수여 대상자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인근 함양군과 무주군에서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으며, 함양군의 경우 61명에게 무주군은 12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각각 수여하였음.

○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남발되지 않도록 대상자 심사 및 결정에 철저를 기할 것.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0
- 나. 제출자 : 정종기 의원 외 9인
- 다. 의안번호 : 제2005 - 48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12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거창군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창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신청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부군수)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급변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그러나 대통령령 제14981호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보조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6. 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의안번호 : 제2005 - 32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12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거창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군이 출연한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
- 군수는 필요시 운영상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등이 발생할 경우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동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거창군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
- 장학기금은 향후 10년간(2014년까지) 100억원의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조성재원은 군비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이자수익 등으로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안 제4조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이자로 장학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당초안	수정안
제1조(목적)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장학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기금목표액 달성전이라도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출연금사용 제한규정을 재검토토록 할 것.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치매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의안번호 : 제2005 - 45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12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치매병원을 찾는 이용자와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 본문 중 “거창군립치매요양병원”을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으로,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우리 정서상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기피하고, 치매환자는 노인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이용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17.
- 나. 제출자 : 이 현 영의원외 11인
- 다. 회부일자 : 2005. 8. 19.
- 라. 상정일자 : 2005. 9. 12(제1차회의)
- 마. 의안번호 : 제2005 - 49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우리군내에 산재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재고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신축 및 개축하면서 나무를 연료로 하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 “농업인주택”. “나무를 사용하는 난방시설”등을 규정 하였음. (안 제2조)
- 지원대상을 우리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로 정함. (안 제3조)

- 지원범위를 난방시설 설치비용중 나무 보일러 구입비로 1백만원이하, 재래식 아궁이 설치시 5십만원 이내로 규정함.
- 난방시설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서류가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함. (안 제5조)
- 지원결정 후 부적격자일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후에도 허위의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집행부에서는 난방시설 종류별 지원 형평성 문제와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과 임산 연료 채취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 유가 상승으로 기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대체 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산림내 간벌 등 폐목 처리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농촌의 난방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이라고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의견

- 제3조 (지원대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의 신축 및 개축시만 지원대상으로 함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더욱 영세한 농가는 제외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으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원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제4조 (지원범위) 신축 또는 개축시 나무보일러 설치비 100만원과 재래식 아궁이 설치시 50만원을 지원토록 함은 지원금액이 보일러 구입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꼭 필요치 않을 경우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기름겸용 보일러 등은 제외되므로 나무를 채취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 제4조 제1호의 보일러시설 지원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정하고,
- 제4조 제2호의 재래식 아궁이 지원사항을 삭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농업인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나무보일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 보일러 시설비 지원금 100만원은 보통 나무보일러 구입비의 전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신축 또는 개축시 누구나 신청 할 가능성이 있고,
- 나무보일러 설치가 남발될 경우 무분별한 산림 훼손으로 산림이 황폐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목을 채취할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을 5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 재래식 아궁이에 대하여는 본체에 재래식 아궁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음.
- 기타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원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시행시 조치할 사항

-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사목이나 간벌된 나무를 화목으로 채취하고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무단 벌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요망.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범위) 농업인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u>다음 각호와 같이</u> 지원할 수 있다.</p> <p>1. 나무보일러의 설치시 보일러 구입비용을 말하며, 지원 한도액은 <u>100만원</u>으로 한다.</p> <p>2. 재래식 아궁이를 설치할 때에는 <u>50만원</u>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범위)①농업인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난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지원액은 나무보일러의 설치시 보일러 구입비용을 말하며, 지원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p> <p><삭제></p>